

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00. 9.

제출자 : 이천시장

□ 제안이유

이천시포상조례중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시장이 행하는 포상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가. 포상은 상금, 상패,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음(안 제8조).
- 나.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은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포상적용의 세부기준을 지침으로 정함(안 제9조제2항).

이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 (포상방법 및 부상)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행하고 상금, 상패,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2)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은 포상적 용의 세부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8조 (포상방법 및 부상)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.</p> <p>②전항의 상장은 상금, 상패,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</p> | <p>제8조 (포상방법 및 부상)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행하고 상금, 상패,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9조 (포상절차) ①(생략)</p> <p>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④(생략)</p> | <p>제9조 (포상절차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되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은 포상적용의 세부기준을 침으로 정하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 |
| | |